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택의 구조, 소방·피난 및 위생 시설,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하여 고시한”을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를 “경우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식 등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0이상	180이하	260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0이상	200이하	240이상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총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을 “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4조 및 제35조”를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안내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지의 출입구 부근”을 “단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독신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제43조제4항 단서 중 “물을 사용”을 “급수설비를 설치”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으로, “하역등”을 “하역 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로 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 ①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배치도, 시설의 종류, 시설별 면적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해당 주민공동시설별로 그 설치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첨부서류 누락으로 인한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구 또는 경량구조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에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 라. (생략)

1. _____

_____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_____

가. ~ 라. (현행과 같음)

2. 3.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

_____. _____

_____ 경우와 _____

_____.

1. 「 <u>건축법</u> 」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별건축구역</u>	<u><삭 제></u>
2. 「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 」 제4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u>경제자 유구역</u>	<u><삭 제></u>
3. 「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u> 」 제7조에 따라 지 정·고시된 <u>혁신도시개발예 정지구</u>	<u><삭 제></u>
4. 「 <u>관광진흥법</u> 」 제7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u>관광특구</u>	<u><삭 제></u>
5. 「 <u>기업도시개발 특별법</u> 」 제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 업도시개발구역	<u><삭 제></u>
6. 「 <u>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u> 」 제5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u>재정비촉진지구</u>	<u><삭 제></u>
7. 「 <u>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u>예정 지역</u>	<u><삭 제></u>
8. 「 <u>택지개발촉진법</u> 」 제3조에	<u><삭 제></u>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
지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④ (생 략)

⑤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
의 경우에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
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
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
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
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
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
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한 표식 등을 식
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계단) ① _____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이상	18이하	26이상
<u>세대내계단 또는 건축물의 옥외계단</u>	<u>90이상 (세대내 계단의 경우는 75이상)</u>	20이하	24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
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

_____.

(단위: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이상	18이하	26이상
<u>건축물의 옥외계단</u>	<u>90이상</u>	20이하	24이상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계단_____

_____.

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삭제

제17조(복도)

①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 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 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제
34조, 제35조 및 제48조_____

⑤ 삭제

제17조(복도)

<삭제>

② (생 략)

제21조(화장실등) ① 주택에 설
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
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
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
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
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
내력·방화·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
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27조(주차장) ① _____

[illegible]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주택 규모 별(전 용면 적: 제곱 미터)	특별 시	<u>광역시·특별자치시</u> <u>및</u> <u>수도권내의</u> <u>시지역</u>	시지 역 및 수도 권 내 의 지 역	그 밖의 지역
85 이 하	1/75	1/85	1/95	1/110
85 초 과	1/65	1/70	1/75	1/85

2. _____

_____.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 제

② ~ ⑧ (생략)

제29조(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 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시 _____
_____.

3. 삭 제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조경시설등)

<삭 제>

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
용한다.

② · ③ (생 략)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 300세
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
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
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
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
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
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
판을 설치할 것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
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
안의 건축물 · 도로 기타 주요
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 ———
—————
—————
안내표지판—————
—————. ———
제2호에 따른—————
—————
—————
—————.

<삭 제>

2. 단지—————
—————
—————

3. —————
————— 그 밖에 —————
—————

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 ③ (생략)

④ 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 · 설계자 · 시공회사 · 감리회사 · 사업승인일 · 사용검사일 · 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생략)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비상급수시설)

—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 —————
—————
—————
—————.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

<삭 제>

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
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
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군 지역의 기준
을 적용한다.

<삭 제>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
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
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
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도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41조(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급·배수시설) ① (생략)

②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신설>

제43조(급·배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 — 급수설비를 설치 —
_____.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

④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하역 등—
— 그 밖에 —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
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
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
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신설>

자치시·시 _____
_____.

⑤ _____

_____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시 _____
_____.

⑥ _____

_____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시 _____
_____.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의무 주민공동시설 설
치의 예외) ①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제외하
다)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
공동시설 설치계획(배치도, 시
설의 종류, 시설별 면적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

	<u>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해당 주민공동시설별로 그 설치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첨부서류 누락으로 인한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